

신호·지시 위반사고

이 홍 로

〈교통안전공단 교수〉

1. 머리말

교통사고 행태중 신호·지시위반 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서 규정하는 10개항의 중대법규위반사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면 종합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가해자는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나, 다만 예외 단서 10개항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중 예외단서 제1호인 신호·지시위반이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 내용중 신호기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를 말한다.

즉, 신호기 내용을 위반하거나 통행의 금지 또는 일시정지 표지내용 등의 신호·지시를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범칙금과 운전면허정지 처분상 적용되는 벌점을 부과하는 등 벌칙이 아주 무겁다.

2. 신호위반 사례

가. 황색주의 신호 위반

신호위반이란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뜻을 위반하여 진행할 경우를 말한다.

예를들면 ① 사전출발 신호 위반 ② 정지선 초과 신호 위반 ③ 황색주의 신호에 무리한 진입 ④ 신호내용을 위반하고 진행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3. 신호·지시위반사고의 성립요건

항 목	내 용	예 외 사 항
1. 장소적 요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나 횡단보도 ○ 경찰관 등의 수신호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방향에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 신호기의 고장이나, 황색, 적색점멸신호 등의 경우

신호위반 단속을 분석해 보면, 대부분 황색주의 신호에 무리한 진입으로 발생되고 있으므로 황색주의 신호에 대한 설치 목적과 신호체계를 이해해야 한다. 황색주의 신호는 선·후 진행차량의 충돌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운영된다.

기본적으로 황색주의 신호는 3초이나 큰 교차로는 4~7초까지 연장 운영되고 있다.

나. 경찰관 등의 수신호 위반

신호기와 안전표지는 일정한 장소에서 제한적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교통상황에 신속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경찰관 등에게 신호기에 우선하는 수신호의 권한을 부여하여 적시 적소에 대처하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수신호 권한이 있는 사람은 교통경찰관외에 전·의경, 헌병, 모범운전자, 교통봉사요원 등으로서 이들의 수신호도 법적 효력이 있다.

이상과 같이 권한있는 자의 수신호에 위반하여 사고를 야기, 치상피해자가 있는 경우는 신호·지시위반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 지시위반

현행 교통안전표지는 주의·규제·지시·보조·노면표시의 5종으로 169가지의 표지가 있으나, 신호·지시위반은 규제표지중 통행금지표지, 진입금지표지, 일시정지표지가 설치된 안전표지에 대해서만 「지시위반」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96.2.13 대법원 판결 95도대16호에 의하면 도로의 바닥에 진입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노면상의 표지만 있으면 안전표지에 해당된다고 판결하였다.

	◦ 지시표지판(12가지)이 설치된(통행금지, 진입금지, 일시정지)구역내	◦ 기타 지시표지판(12가지 표지판 제외)이 설치된 구역
2. 피해자적 요건	◦ 신호·지시위반 차량에 충돌되어 인적피해를 입은 경우	◦ 대물피해만 입은 경우는 공소권 없음 처리
3. 운전자적 요건	◦ 고의적 과실 ◦ 의도적 과실 ◦ 부주의에 의한 과실	◦ 불가항력적 과실 ◦ 만부득이한 과실 ◦ 교통상 적절한 행위는 예외
4. 시설물 설치요건	◦ 도로교통법 제3조에 의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설치한 신호기나 안전표지	◦ 아파트 단지 등 특정구역 내부의 소통과 안전을 목적으로 자체적으로 설치된 경우는 제외

4. 신호·지시위반 사고유형

- ① 교차로에서 신호위반 진행사고
- ② 경찰관의 수신호 위반 사고
- ③ 황색주의 신호에 무리한 진입사고
- ④ 황색주의 신호에 사전 출발사고
- ⑤ 좌회전 신호없는 교차로 좌회전중 사고
- ⑥ 횡단보도에서 차량정지 신호위반 사고
- ⑦ 유턴지역에서 반대차량 신호위반 사고
- ⑧ 우회전중 좌측 진행차량과의 사고
- ⑨ 유턴지역 신호위반 유턴사고
- ⑩ 진행신호 유턴(유턴금지구역)중 사고
- ⑪ 비보호 좌회전 지역 좌회전중 사고
- ⑫ 노면표시와 신호기의 내용상 사고
- ⑬ 쌍방 신호위반 사고
- ⑭ 보조 신호등 위반사고
- ⑮ 가변차선 도로 신호위반 사고
- ⑯ 횡단보도의 보행신호등 위반 사고
- ⑰ 횡단보도 신호위반차와 자전거 타고 가던중 사고
- 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 ⑲ 일시정지 표지판 설치구역 내 사고
- ⑳ 통행금지 구역 내 사고
- ㉑ 일방통행 구역 내 사고
- ㉒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사고
- ㉓ 좌회전 신호에 따라 회전하는 차와 정지신호에 우회전하던 차의 사고
- ㉔ 교차로 아닌 일반도로에서 신호기에 별도지시 없고 노면표지에 따라 회전중 사고

5. 신호·지시위반 관련판례

가.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 이르기 전, 황색주의

신호가 들어왔으나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반대방면 차량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황색신호위반 차량에 사고 책임이 있다(81 고단6973 서형지법).

나. 직진신호에 따라 진행중 반대도로에서 교차로 진입전 황색주의 신호에 사전출발 진행하여 오는 차에 대한 주의의무는 없다(86도 589대판 86. 8. 19).

다. 교차로에 녹색, 황색, 적색의 삼색 신호기만 설치되어 있고 따로 비보호 좌회전 표시가 없는 경우 차마의 좌회전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91도 2330대판).

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방통행도로를 역주행하여 차를 운전한 것은 안전표지 지시에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된다(93도 2562대판).

마. 자기차선을 따라 운행중 신호위반한 차량을 충돌한 경우 당시 일부 과속이었다고 해도 사고책임을 물을 수 없다(79도 3004대판).

6. 맺는 말

이제까지 신호위반 사례와 판례를 통하여 살펴본 바와 같이 신호·지시를 위반하여 단속되면 최고의 범칙금뿐만 아니라 15점의 행정처분벌점이 부과되며, 인사 사고를 일으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0개 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게다가 단속만 되어도 보험료가 할증되어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우리 모두가 신호위반이 없는 명랑한 거리를 만드는데 앞장서야겠다.